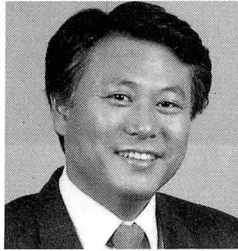


정보화 사회와 技術士

—기술혁신 의욕을 고취시키자—



金 麗 暉

〈한국증권전산(주) 시장시스템부장〉

■ 필 자

-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 졸업
- ▲ 한국증권거래소(업무개선위원회) 근무
- ▲ 한국증권전산(주) 증권시스템부장(前)
- ▲ 정보처리 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
- ▲ 국가기술자격 제도심의위원회 전문위원(정보처리분야)
- ▲ 한국정보시스템 감사인협회(EDPAA 서울지부) 진행위원장(現)
- ▲ 한국기술사회 정보처리분회 부회장(現)

서 언

끊임없는 기술적 혁신을 요구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기술은 다름아닌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다. 따라서 컴퓨터와 통신기술분야를 연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래 국제경쟁사회에서 기술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첨단기술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술자라고 부른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기술자들을 장인(匠人)이라 칭하고 유교문화의 영향하에 지위를 사농공상의 순서에 따라 비교적 하위계층으로 분류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직업인으로서의 장인을 천시하는 경향까지 있었다고 관계문헌들은 전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인지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기술발전이 늦었으며, 후기산업시대에는 한때 공업후진국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칭호까지 부여 받아야 했었다.

현대에 와서 기술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기술자(Engineer)를 존중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보장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기술자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알맞는 지위를 주어 적절하게 대우하도록 하므로써 기술인력을 국가경제 발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국가기술자격법의 요체를 살펴보면 그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본 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요구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며,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보유해야 하는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법에 따라 그 기술인력의 자질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므로써 기술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그 힘을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은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절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이라고 제 1 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자격’이라 함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사·기능장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본법에서는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자격취득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위를 보장·유지토록 하며 그 취업 및 신

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상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사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자.

기술사의 역할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실시되는 자격검정을 거쳐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실무경험을 가진자만이 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현장 중시의 기술의 달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기술사는 일선산업현장에 있어서의 지도자이며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최고봉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사회에서 박사 학위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고 있듯이 산업계에 있어서는 기술사 자격을 최고로 평가하도록 그 응시자격을 철저히 규정하고 법령이 정해는 엄격한 검정절차를 거쳐서 합격한 자만이 기술사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술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총합적 기술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자격을 정하여 기술사를 우대하도록 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술사들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물론 기술용역육성법상의 기술인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용역법 등록 신고조건이 있어 강제규정으로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것도 기술인력의 부족함을 이유를 들어 그 조건을 완화하거나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술자격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사

를 위하여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국내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개선방안

첫째, 기술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민간 자율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산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망, 금융망, 국방망, 공안망 등의 국가기간전산망이나 표준화사업 등은 국가가 그 기술능력을 공인한 기술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용역을 위탁하여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 생산품의 감리는 기술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완공된 건축물을 반드시 공인자격이 부여된 건축사에게 감리받도록 하거나 또는 공인회계사만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이해의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자격과 업무수행권한에 관한 실제적 규정을 하나의 일체화된 법령으로서 입법화되어야 한다.

기술자격과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술자격자의 업무수행권한은 기술용역법에 따라 등록조건으로서 신고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격과 그 권한이 체계적으로 대응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두가지 법령을 한데 묶어서 건축사법이나 공중인법 또는 세무사법과 같이 특별법(예 : 기술사법)으로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 사업과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사

항은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므로써 책임과 권한을 균형있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R&D)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컴퓨터나 통신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의 연구개발은 그 실현에 있어서 상당한 재정적 위험부담을 수반한다. 그러나 하이테크(HIGH-TECH)시대에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부담을 국가가 분담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래 국제사회에서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기술자격을 인정한 기술사에게 금융혜택(장기저리개발투자금 지원)이나 세제상의 제혜택을 제공하므로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다 양질의 기술축적이 가능하도록 그 여건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기술용역업을 하고 있는 기술사를 보호하고 기술사를 고용한 기업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여 고급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격자를 대우하도록 하므로써 이들 기술사들이 마음놓고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축적의 기반 위에 안정된 첨단기술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술사는 기술사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에 전력하여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